

울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재나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2. 1. 11.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소43708 판결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4859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61,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철회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3706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호로 항소하는 한편,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5. 13.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2015. 5. 20. 위 판결문을 직접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지출한 유류비 중 1일 20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비를 피고가 미사용분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의 사유(판단누락)가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5. 20.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